

의안번호	2203123
의 퇴 인	성일종 의원
회 답 일	2024. 10. 18.
추 계 번호	24A310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중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60억 7,400만원(연평균 312억 1,5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의 연계 법안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에서 추계된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재정소요가 두 법안과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일정 비율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 (안 제5조제2항제1호)	35,508	33,361	31,215	29,068	26,922	156,074	31,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의안번호 제3120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8.23.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31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8.23.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2항제1호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사업비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그 가산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2항제1호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의 세출 중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연계 법안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9항³⁾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므로,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의 부담분인 것으로 봄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중 특별회계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금액만큼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인 것으로 전제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실시되는 다른 사업 예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사업이 신규 실시되는 것으로 봄
 - 비용추계 시 다른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일반적인 전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이 추가재정소요가 됨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특별회계의 재원 중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4)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현 시점에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3%만큼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제10항5)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은 3%보다 적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지원 비율의 상한인 3%만큼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4)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⑩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 및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 해당 개정규정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외에도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함께 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의 경우 징수액이 크지 않아 추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특별회계에 따른 총 가산금 수납액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5,700만원 수준⁶⁾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3%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전망치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추계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60억 7,400만원(연평균 312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각 연도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전망치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석유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각 징수 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⁷⁾

6) 아래 가산금 수납 실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외에도 「광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수납되는 가산금 일체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가산금이 추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금액의 3%보다도 적을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2019~2023)
가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9	133	59	33	20	5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시행된 조치 중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추세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 한시적 인하 조치(톤당 24,242원→16,730원)의 경우 해당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음

[표 2]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석유 수입 부과금 ¹⁾	석유 판매 부과금 ¹⁾	합 계
실적	2014	1,601,095	240,595	1,841,690
	2015	1,640,742	240,454	1,881,196
	2016	1,571,772	222,128	1,793,900
	2017	1,596,292	217,863	1,814,155
	2018	1,794,918	216,317	2,011,235
	2019	1,408,599	195,469	1,604,068
	2020	1,115,179	192,224	1,307,403
	2021	1,298,172	186,740	1,484,912
	2022	1,509,245	151,394	1,660,639
	2023	918,364	168,975	1,087,339
전망	2024	1,103,347	151,792	1,255,140
	2025	1,041,149	142,443	1,183,592
	2026	978,951	133,093	1,112,044
	2027	916,752	123,743	1,040,496
	2028	854,554	114,393	968,948
	2029	792,356	105,044	897,400

주: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 수입 부과금: 원유·석유제품, LNG(일반용·발전용)

－ 판매 부과금: 고급휘발유, LPG(부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일정 비율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데 따른 소요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일정 비율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 (안 제5조제2항제1호)	35,508	33,361	31,215	29,068	26,922	156,074	31,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연계 법안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소요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재정소요가 두 법안과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이 최근 10년간(2014~2023) 징수 실적의 추세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규모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